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9. 30 선고 2021가단1722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1. 9. 9.

판 결 선 고 2021. 9. 30.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2/9지분에 관하여 2017. 2. 12.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2/9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3. 21. 접수 제3279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판사 김상호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대구광역시 서구
 동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서구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10층 호 84.66 m²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대구광역시 서구 대 18046.6 m²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18046.6 분의 41.32

-이상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관할-

청 구 이 유

1. 양수금 청구

가. 원고 회사는 아래와 같이 본 채권의 최종양수인으로써 양도대상 채권의 원금 및 이자, 지연손해금등 양수받은 채권에 대한 모든권리, 보증인에대한 모든권리, 모든 담보권 및 기타 이에 수반하는 권리일체를 가지는 양수인인 법인입니다. 또한, 소 외 은행이 가지고 있던 채권,채무 등의 권리일체를 원고회사가 인수키로 하였고, 본 계약에 따른 채권 양도 사실을 소외 C에게 통지하였습니다.

순번	채 권 양 도 인	채 권 양 수 인	채권양수도계약일	비고
1	중소기업은행	(주) D	2008.5.27.	
2	(주) D	(주) E	2008.6.27.	

2. 소외 C은 소외 중소기업은행과 은행신용카드거래 기본약관을 승인하고 카드가입신청서에 서명 날인 후 동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고, 소외 C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차 56333호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8.9.17.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 청구

가. 원고는 아직 변제받지 못한 위 금원을 변제 받고자 보전절차를 취하려 하였으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은 2017.2.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7.3.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동고과 제32794호 피고의 이혼으로 소유권 이전된 상태였습니다.

나. 소외 C은 이미 채무가 있음을 알고 상속자분을 포기하고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무자력이 된 것이며 이것은 명백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3. 결어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여, 고의로 이전된 소유권을 취소하고 채권확보를 하고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고자 본소에 이른 것입니다.

